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359호
2. 발 의 자 : 채수지 의원 등 20명
3. 발의일자 : 2025년 2월 3일
5.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II.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이에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근거를 신설함.

Ⅲ. 주요내용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6항).

Ⅳ.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3]

다. 입법예고: 2025.2.11.~ 2.15.(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채수지 의원 등 20명에 의해 의안 번호 제2359호로 공동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안 제7조제6항은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속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촉 대상의 자격과 위촉 기간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위촉직 위원의 성별 할당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¹⁾.

1)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을 위촉할 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²⁾.

- 이는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여 정책결정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별 균형을 통해 편향된 의사결정을 방지해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규정에서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4. 교육감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 ⑤ (생략)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할당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현재 법 제21조제2항은 특정 성별에 대한 제한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특정 성별의 할당 기준(10분의 6)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단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³⁾.
 -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이 특정 성별에 대한 기준(60%)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달리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동 개정조례안이 법보다 강한 구속력이 지니게 됨으로써 조례와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 더욱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⁴⁾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유효성 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부득이하게 성비 조정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해소할 방안이 없는 경우 형식적인 임명만이 가능해 위원회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운영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 ⑤ (생략)

4)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법적 정합성과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법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에서 예외적 사항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 취지는 공감하나, 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위법령 준수를 위해 예외 규정을 추가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9, 2025. 2.13.).

- 서울시교육청은 법 제21조제2항 단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위원회⁵⁾’의 의결이 필수적이나 여성가족부에서는 ‘실무위원회’의결 대상에 교육청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⁶⁾이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의견을 이유로 법과 달리 ‘실무위원회 의결’을 제외하고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	교육청 의견
<p>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p>	<p>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성별 할당 기준 예외 사항의 의결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는 「양성평등법」 제21조제2조제1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설치된 실무위원회에서 성별 할당 기준 예외 사항을 의결하고,

5)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2. 13.). ‘제328회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서(행정관리담당관)’.

그 외 ‘시·군·구’에서는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도 위원회⁷⁾에서 성별 할당 기준 예외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현재 「양성평등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설치된 실무위원회에서는 이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별 할당 기준 예외 사항을 의결하고 있는바, 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역시 현재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현재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실무위원회)’에 현재 교육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법적 문제라기보다 실무 차원의 문제인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동일하게 실무위원회 의결에 대한 사항을 예외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실무위원회가 교육청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성별 할당 기준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 (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 (2180-8270) 이현주 (2180-8272)
----------	--------------------	-------	--

7)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